

협의회의 관할 유역(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관할 유역
1. 서울지방환경관서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한강 하류 유역(북한강 유역은 제외한다), 아라천 유역, 안성천 유역, 서해 측 휴전선에서 안성천 하구 사이의 한강 서해권 유역
2. 원주지방환경관서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한강 상류 유역(북한강 유역을 포함한다), 양양 남대천 유역, 강릉 남대천 유역, 삼척 오십천 유역, 경북·강원 도계에서 동해 측 휴전선 사이의 한강 동해권 유역
3. 대전지방환경관서	삽교천 유역, 금강 유역, 안성천 하구와 금강 하구 사이의 금강 서해권 유역
4. 익산지방환경관서	만경강 유역, 동진강 유역, 영산강 유역, 탐진강 유역, 섬진강 유역, 금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 사이의 영산강 서해권 유역, 영산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섬진강 남해권 유역, 제주도권 유역
5. 부산지방환경관서	가화천 유역, 서낙동강 유역, 낙동강 유역, 회야강 유역, 태화강 유역, 형산강 유역, 영덕 오십천 유역,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낙동강 남해권 유역, 낙동강 하구와 경북·강원 도계 사이의 낙동강 동해권 유역